

윤리경영위원회운영규칙

제정 2022. 09. 01.

개정 2023. 01. 13.

개정 2024. 07. 30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윤리경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
2. 윤리경영 자체진단 및 제도개선
3. 윤리경영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수단 확보
4. 윤리경영 실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부원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24.07.30.>

1. 비상임이사
 2. 감사실장
 3. 윤리경영 전담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부문장, 본부장, 센터장
 4. 윤리경영 실행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부문장, 본부장, 센터장
-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원장,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.
-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장이 되며, 회의 의안작성, 회의록, 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⑦ <삭제 2023.1.13.>

제4조(외부위원)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.13.>

② 외부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윤리경영에 관한 시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원장이 정한다. <조항이동 2023.1.13.>

③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제해야 한다. <조항이동 2023.1.13.>

1. 주무부처 공무원

2. 그 밖에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.13.>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2. 당연직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④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⑤ 심의 · 의결사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용역, 자문, 연구 등에 참여 한 경우

2. 위원 또는 그 배우자, 자녀, 부모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(배우자의 자녀 · 부모를 포함)

3.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4.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심의 의결서에 서명·날인하고 별도의 회의록과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, 윤리경영 계획의 경우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출석)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

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 2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- ② 서면 의결 시 의결 결과를 자체 없이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 담당직원 또는 관련 직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의 지급)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보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1.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7.30.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